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보고서 공시사항의 검토와 개선방안

김광윤*
심태섭**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감사보고서의 공시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감사보고서 공시사항중 주석사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분식회계의 두 가지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임의로 선정한 표본기업의 실제 공시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공시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 대한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도출하였다. 우선 첫째, 주석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모범적으로 공시한 기업의 사례를 마련하여, 공시의 내용이 보다 적정하여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사보고서의 주석내용과 부속명세서간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주석사항의 기술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행 주석사항에 추가적으로 기재할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환경 변화가 영업활동 등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주석사항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회계투명성, 공시사항,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kimkyn@ajou.ac.kr, 031-219-2716, 주저자
** 인천전문대학 세무회계과 교수, tsshim@icc.ac.kr, 032-760-8794

논문접수일 : 2004년 3월, 게재확정일 : 2004년 5월

Ⅰ. 서 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회계투명성이 시중의 화두가 되어 왔다. 이것은 당시 출범한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가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제시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투명성의 개선을 들면서 비롯되었다. 회계투명성 내지 투명회계는 본래 회계정보의 공시측면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벌기업의 복잡한 지배구조에 기인한 경영불투명성이 초래하는 분식회계의 반의어로 확대되었다.

이에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회계부정 및 분식회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회계감독당국은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여 왔다. 즉 최근 금융감독원은 감리대상 기업의 수를 매년 증가시켜왔다. 특히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감리대상을 매년 늘려왔으며, 그에 대한 감리지적비율도 증가하여 금융감독원에 의한 감리활동이 계속 강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업의 감사인인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와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회계투명성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하다. 국제적으로는 국제투명성위원회가 부패추방운동차원에서 매년 국가별 청렴도를 평가하여 이를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로 발표해 오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 우리나라가 133개국 중 50위(2002년에는 102개국 중 40위)를 차지하여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3).[1] 한편 세계적 회계법인인 PricewaterhouseCoopers(PWC)는 2002년 1월에 실시한 국가투명도 조사에서 35개 국가의 투명성 정도를 불투명지수(Opacity Index)로 측정하여 발표했는데 CLEAR(부패, 법적 불투명성, 경제정책 불투명성, 회계와 기업지배구조 불투명성, 규제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및 자의성 등 5개 요인)지수를 종합한 결과 한국이 31위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이중 회계와 기업지배구조 불투명성(Accounting and Corporate Governance Opacity)항목의 경우 35위인 최하위로 평가되어(PWC, 2002)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평가에 접하여, 장지인 등(2002)이 한국회계학회의 위촉을 받아 이에 반박하는 연구를 같은 방식으로 표본수를 넓혀 재시행한 결과 회계부문 투명성이 21위로 나타남으로써 다소 상승하였으나 역시 중하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투명한 회계관행의 결과는 우리나라 여러 기업에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의 분식회계는 1997년의 한보철강과 기아자동차를 필두로 동아건설(1998), 대우그룹 12개사(2000), 현대건설(2000) 등으로 계속되어 오다가 2003년엔 SK글로벌까지 이어져 증권시장은 물론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IBRD 등 국제채권금융기관의 요구로 한편으로는 타의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심기일전하여 회계제도의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고 자부하던 중이었기에 위와 같은 최근의 낮은 회계투명성에 대한 평가와 여러 기업의 실태에 크게 실망하고 자성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감사보고서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자료중 기업과 독립적인 제 3자의

---

1) 조사 국가들 중 청렴도가 높은(CPI가 높은) 나라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싱가포르 순이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은 그리스, 코스타리카였다.

전문적인 감사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 내부자가 기업 내부의 의도를 반영하여 제공하는 다른 정보와 달리, 제 3자의 독립적인 입장에서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내용의 확충과 감리제도 등의 제도를 통하여 금융감독기관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정보에 포함된 감사보고서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사업보고서는 비회계정보가 많이 포함되었기에 본 연구의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여러 공시사항중 주석사항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회계투명성을 이루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 분식회계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자료통계를 분석하여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그 유형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 개별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정책건의사항을 도출한 뒤 결론을 맺는 것으로 하였다.

Ⅱ.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관련기관의 노력

회계투명성(Accounting Transparency) 또는 투명한 회계란 표현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즉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부 이용자에 비하여 정보가 부족한 외부이용자에게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 회계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일체의 분식(window dressing)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2)]

이러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각 기관별 투명성제고를 위한 노력은 <그림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1>에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확보와 관련된 관련기관과 각 기관의 대표적인 노력이나 조치가 표시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보면 회계기준제정기구, 기업, 외부감사인, 정보이용자 그리고 금융감독당국은 각 기관별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왔다.[3)] 우선 회계기준제정기구는 종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루어져왔던 기업회계기준 개정 등에 관련 업무가 민간회계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으로 이관되면서 기업회계에 대한 각종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한국회계연구원은 기업회계기준서를 제정하는 등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개혁을 통하여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감사위원회의 설치등의 조치를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려 노력하여왔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감사인은 우선 감사인의 독립성를 강화하고자 주식 등으로 감사보수를 지급하거나, 피감사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의 제한 추진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회계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내에 품질관리감리위원회를 통하여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자율적으로 감리하고 있으며, 감사보고서상 허위기재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왔다. 다음으로 정보이용자들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의 추진 등을 통하여 기업이 회계투명성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단체중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왔다. 우선 기업회계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정보의 적시성과 이용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분기보고서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기업공시내용을 확충하여, 정보이용자간 정보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공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당국은 감리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반감리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을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리결과에 대한 벌칙을 보다 강화하여, 감사인에 대하여 종래의 재정경제부장관에의 처분건의(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감사인지정제외, 고발 외에 감사업무참여제한과 검찰수사의뢰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해당 회사에 대하여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변경 요구, 시정요구, 각서제출요구, 경고・주의 등 외에 검찰수사의뢰를 추가하는 등의 노력으로 회계투명성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기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획

---

2) 회계투명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한국회계연구원(2002)을 참조하시오.

3) 이하의 내용은 금융감독위원회 외(2000)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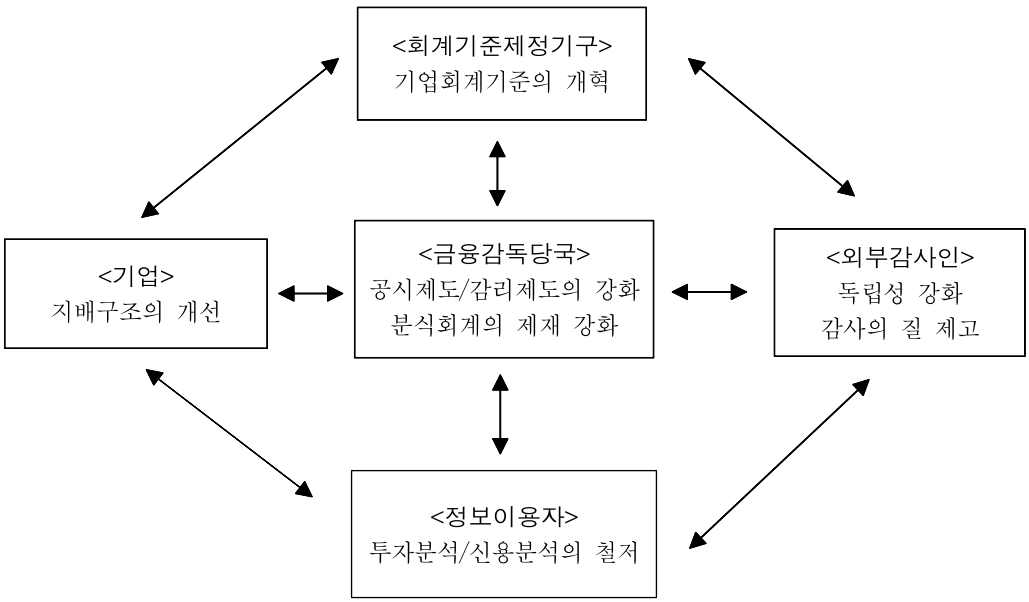

〈**그림 1**〉 회계투명성제고를 관련기관의 노력

기적으로 나아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감사보고서상의 주석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한 실태분석과 정책건의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우리나라 분식회계의 현황

1. 감사보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리결과 분석

분식회계의 특성상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고 항상 사후에 발견이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회계의 분식회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감리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상장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감리와 기업공개예정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감리가 있다. 그리고 중대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의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고 인지된 회사 및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주거래은행 등 주요 이해관계인이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를 이유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리를 요청한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감리가 있다. 이외에 외부감사대상법인(직전 사업년도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법인)중 비상장회사(공개예정회사 제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위탁감리가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감리 및 감리결과 지적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감리유형별 감리실시 및 지적현황*

구분	2002		2001		2000	
	감리실적	지적회수	감리실적	지적회수	감리실적	지적회수
일반 감리	51회 (51사)	8(8사) (15.7%)	14회 (14사)	2(2사) (14.3%)	6회 (6사)	2(2사) (33.3%)
수시 감리	- -	- -	- -	- -	2 (1사)	2(1사) (100.0%)
특별 감리	36회 (35사)	33(33사) (91.7%)	27회 (27사)	20(20사) (74.1%)	30 (17사)	28(15사) (93.3%)
위탁 감리	18회 (18사)	18(18사) (100%)	43회 (43사)	43(43사) (100%)	40회 (40사)	40(40사) (100%)
계	105회 (104사)	59(59사) (56.2%)	84회 (83사)	65(64사) (77.4%)	78회 (64사)	72(58사) (92.3%)

* 이재식(2002)의 2003년 2월말 현재 집계치로 수정 보완한 것임.

이상에서 보듯이 일반감리를 실시하는 횟수는 급증하였으나, 감리결과 지적된 기업의 비율은 비교적 적다. 그러나 특별감리의 경우 그 횟수는 매년 비슷하나, 일반감리와 비교하여 지적비율은 상당히 높다. 이외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실시한 위탁감리결과 지적된 기업의 수는 2002년에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음으로 이렇게 지적된 기업들의 지적사항을 각 유형별로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유형별 감리지적사항*

감리실시연도 / 기업회계기준 위반유형	2003.11.	2002	2001	2000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주석미기재	41	26	33	20
2. 재고자산 과대계상	9	8	4	22
3. 매출채권 과대계상	1	2	9	13
4. 유형자산 과대계상	2	7	6	9
5.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10	5	3	12
6. 감가상각누계액 과소(대)계상	-	2	1	1
7.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2	-	1	8
8. 자산·부채 과소(대)계상	10	6	3	16
9. 계정과목 분류오류	6	5	4	9
10. 매출액 과대계상	4	3	4	10
11. 이자비용(미지급비용) 과소(대)계상	3	2	3	4
12. 부외부채 미계상	2	4	2	5
13. 이자수익 과대계상	-	-	-	3
14. 외화환산관련 오류	-	1	1	4
15. 개발비 과대계상	4	1	1	7
16. 선급비용 과대계상	-	-	-	2
17. 장·단기대여금 과대계상	-	-	-	1
18. 유가증권매매익 과대계상	-	3	1	1
19. 유가증권평가손익 과대계상	-	-	5	-
20. 투자유가증권의 지분법 평가오류 등	10	18	14	-
21. 매출원가 과소계상	-	2	1	4
22.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오류	1	-	1	6
23. 기 타	1	5	5	16
합 계	106	100	102	173

* 이재식(2002)의 자료와 월간 공인회계사 2004년 1월호의 pp.60-62의 자료를 합계한 것임.

위에 분석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에서 지적된 항목은 다른 기업의 경우나 앞으로도 그 자체 항목이 분식회계항목이 많다. 또한 이러한 항목에서의 각종 공시사항도 부실하여 질 가능성도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지적시 지적된 항목을 유념하여, 주석사항을 분석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석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의 유형

우리나라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증권감독원의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에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감리결과[4]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주석사항의 실태를 보고자 한다.[5]

금융감독원에서 감리결과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석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우선 첫 번째로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이다. 다음으로 해당기업의 대표이사, 자회사 등과의 거래내역을 성실히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재무제표작성시 구체적인 자산평가기준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향후에 회사에게 우발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와, 회계기간 중 발생한 사항 가운데 기업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로 진행 중인 기업개선약정 미기재 등 다양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미기재 등 다양한 형태의 주석미기재가 있었다.[6]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사 주석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은 우리나라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의 실태와 그 개선안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다음 절에서 위의 형태를 감안하여, 실제 우리나라 기업의 주석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

4) 자료분석시 2000년 9월 15일에 발표된 대우그룹에 대한 특별감리부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의 내용이 다소 개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000년 5월 11일 발표된 SK증권의 역외펀드를 통한 파생상품거래손실 등에 대한 감리결과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증권업이고 또한 문제가 된 사항도 다른 업종에 적용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5) 물론 금융감독원에 의해 지적이 되고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의 임원이나 공인회계사가 징계를 받은 모든 경우를 분식회계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분식회계의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감리결과 적발된 경우를 분식회계로 표현하였다.

6)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광윤·심태섭(2004)의 p.19-21의 내용을 참조하시오.

Ⅳ.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분석을 통한 사례연구

위의 분석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기업에는 다양한 형태의 분식회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선정된 기업들을 조사하여 실제 우리나라 기업 주석사항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각 항목별로 공시방법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7]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 제조업체 36개 업체의 2001년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였다.[8] 각 항목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위의 분석을 근거로 이와 관련된 항목이나 내용이 각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어떻게 공시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각 항목별로 주석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회사의 개요

가. 사례기업의 주석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36개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회사의 주요한 영업내용, 주요 공장의 위치 등은 비교적 충실하게 기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요 주주와 그 주주의 지분율 등에 대한 기술은 각 회사마다 매우 상이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기술한 회사도 상당수가 있었다.

1. 회사의 개요
당사는 각종사류, 직물류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 관리하의 TC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XX동 X가 XX번지에 PB주식회사로 1962년 12월 5일에 설립되었으며 1967년 12월 15일에 BL방적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오다 1992년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BL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1989년 5월 30일에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주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대신 최대주주와 그 지분율 정도만을 기술하는 데 그친 기업이 많았다. 이 외에 회사의 회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환경의 변화(기업간의 합병내용, 사옥의 매각 등)를 기술하였거나,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한 회사는 거의 없었다.

나. 사례기업의 주석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우리나라 기업의 회사개요에 대한 주석내용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개괄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너무 추상적인 것이 원인이다. 그러므로 감사보고서를 이용하는 이용자입장에서 좀더 세부적인 항목을

---

7) 본 연구는 분식회계의 유형 중 “주석공시사항”부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실제 공시형태를 분석하였다. “재무제표표시 및 회계처리”사항은 그 특성상 장부나 관련증빙 등 기업의 실제 자료를 분석하여야 파악될 수가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석공시사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실제 공시내용을 분석하였다.
8)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업의 명칭, 해당기업의 감사인 명단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각 기업들도 이 부분을 적절히 이용하여 향후 새로이 진출하려는 분야나 회계연도중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성과를 보인 상황에 대한 공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개요부분도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회사를 평가하는 데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평가손익의 내용

가. 사례기업의 주석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기업의 대부분이 기업회계기준에 언급된 각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기술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이 해당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을 이해하는 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의 내용(특히 투자자산의 평가, 대손충당금의 설정기준)등에 대한 기술은 더욱 형식적이었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정보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추가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회계처리의 결과(외화환산의 결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내역 등)를 이 부분에 기술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혼동을 가중시킬 위험도 있다.

8) 퇴직급여충당금

회사는 1년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방법에 따라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은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5,068,518천원 및 4,409,247천원이며, 회사는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중 1,054,322천원과 501,711천원은 (주)한빛은행과 삼성생명에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보험금수익자로 한 퇴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는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보장되며 동 퇴직보험은 근로자별로 관리되므로 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거 1999년 4월부터 회사와 임직원이 기본급여의 4.5%씩 각각 부담하고 있으나, 개정 전 국민연금법에 따라 회사가 임직원 부담분 중 일부를 대납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전환금과목으로 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는 바,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금 중 국민연금으로 전환된 금액은 각각 145,844천원 및 185,409천원입니다.

한편, 당기와 전기 중 실제 지급된 퇴직금은 946,909천원 및 3,141,357천원입니다.

나. 사례기업의 주석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이 부분은 기업의 회계처리방침에 대해 기술하기에,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업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기업의 회계정보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보다 자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식회계의 소지가 있는 계정과목부분(투자자산의 평가, 매출채권의 평가 등)에 대한 회계방침은 자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각 계정과목별 자세한 회계처리 결과에 대한 기술(외화환산의 결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내역 등)은 지양하여 각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결과를 기술한 뒷부분의 주

석의 내용과 겹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줄여야 할 것이다.

3. 회계변경

가. 사례기업의 주석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업 중에서 회계변경을 공시한 기업은 많지 않다.[9] 한 기업의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직전년도부터 외부감사를 받기 시작하여, 해당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분법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을 감사보고서 본문의 특기사항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함께 회계변경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였다. 이러한 공시는 위의 모범적인 공시사례에 비하여 회계변경의 누적효과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만을 공시할 뿐,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이 과거년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때 각 연도별로 계상될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 및 중요하게 변동한 항목에 관하여 공시하고 있지 않다.

나. 사례기업의 주석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경우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과거 3년간의 내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 변경내용이나 사유 및 당해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만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회계처리기준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각 변경에 대한 공시의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은 회계처리기준의 변경보다 더 자의적인 것으로 이익조작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은 물론이고 회계추정의 변경의 경우도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에 준하는 주석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4. 우발부채 및 주요 약정사항

가. 사례기업의 주석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 검토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발부채 중 견질어음이나 수표의 내용을 포함한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충실히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외에 기업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약정사항이나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공시에서는 기업마다 공시의 충실도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아래의 사례와 같이 최소한의 내용만을 별도의 설명없이 단순히 표로 공시한 경우도 있다.

다. 계류중인 소송사건

대차대조표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사항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NK섬유	(주)BL	부당이득금반환	731,507	진행중
	〃	(주)BL	NK섬유 물품대금	957,929	진행중

9) 본 연구의 대상 기업중 회계변경에 대한 좋은 예가 없었기에 이 부분은 곽수근 외(2001)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또한 1997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의 내용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이 해당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29. 경제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

1997년 말 외환위기로 한국과 아시아지역 여러 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그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 및 경제전반의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한국의 경제상황은 여러 가지 지표로 보아 호전되어 왔으나, 최근 구조조정의 지연 및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경제는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불안요인은 회사의 영업이나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감사보고서를 이용하는 투자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없어, 회계정보로서의 유용성이 의심된다.

나. 사례기업의 주석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우발채무에 대하여는 기업들마다 공시하는 내용과 그 정도가 매우 상이하였다. 이에 따라 우발채무에 대한 내용 중 반드시 공시하여야 할 내용을 정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우발채무의 대표적인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a. 담보제공 및 보증내용
b. 진행 중인 재판내용
c. 주요 약정사항
d. 기타 :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불확실성 등

위의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 우발채무의 구체적인 내용,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도록 공시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5. 장 · 단기금융상품

가. 사례기업의 주석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기업의 대부분이 장·단기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대부분 자세히 공시하고 있다. 비록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만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단기 금융상품을 부속명세서 형태로 자세히 공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오히려 정보의 과다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의 공시는 조정되어야 한다.

나. 사례기업의 주석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모범공시기업을 포함한 사례기업의 대부분이 장·단기 금융상품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세하게 공시하고 있다. 이에 이 부분의 내용은 간단히 공시하며, 기업회계기준에 제시한 대로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예금의 내용만을 공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용이 제한된 현

금 및 예금에 대하여는 사용제한의 이유, 금액, 관련된 채무, 이자율 그리고 계정과목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6. 투자유가증권

가. 사례기업의 주석내용 분석

본 연구의 사례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각 계정과목별로(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및 관계회사주식 등) 보유현황을 주식수, 지분율, 취득가액, 시가 혹은 순자산가액 그리고 장부가액 등으로 상당히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간의 상호출자 등 복잡한 투자관계가 있어, 이러한 현실 하에서는 다소 복잡하지만 이러한 공시내용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보유현황에 대한 자세한 공시에 비하여, 지분법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실은 대부분이 공시하고 있으나, 그 재무제표가 외부감사를 받았는 지의 여부나, 결산기가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에 대한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 내용은 부실하다.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이 지분법으로 평가한 근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나. 사례기업의 주석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투자유가증권은 우선 그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즉 우선 투자유가증권을 투자주식과 투자채권으로 분류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주식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지분법적용주식 등으로 나누어 공시하고, 각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회사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그리고 장부가액 등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해당회사의 순자산가액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그 사실, 지분법으로 평가한 경우 투자제거차액의 처리내용, 미실현손익의 제거내용, 종목별 지분법 평가 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특히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감사받았는지의 여부와 만일 가결산재무제표를 이용하였다면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결산기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하였는가도 설명되어야 한다.

7. 장기차입금

가. 사례기업의 주석내용 분석

본 연구 사례기업의 경우 장기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차입금의 내용, 상환계획 그리고 관련된 담보제공의 내용을 모두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차입금의 내용과 관련된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연결함이 없이 단순히 그 내용을 표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장기차입금은 기업의 재무구조 및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이다. 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자는 기업의 현재의 재무상태뿐 아니라 부채와 관련된 미래의 재무상태까지 예측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공시형태로는 정보이용자가 회사의 자금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나. 사례기업의 주석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현재 장기차입금에 주석공시는 대체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적 측면에서는 다소 과다할 정도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장기차입금의 공시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장기차입금과 사채를 각 계정과목별로 별도로 공시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예 고정부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차입금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담보 및 지급보증의 내역과 관련된 장기차입금(사채포함)의 내역을 연결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상환능력(담보 및 지급보증 포함)을 판단하는 데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8.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주요거래내용

가. 사례기업의 주석내용 분석

우선, 본 연구의 사례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주주·임원 그리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표 형식으로 간결하게 공시되고 있다. 즉 기중의 거래내용 중에 중요한 거래내용만을 금액만으로 기술하고 있거나, 다음 사례와 같이 기중의 금액변화는 표시하지 않고, 기말 현재의 채권·채무의 잔액만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13. 임직원 및 주주와의 거래내역

당기말 현재 회사와 임직원 및 주주와의 거래내역에 따른 채권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구 분	이자율(%)	당기	전기
단기대여금	대표이사일시가불	-	14,000	18,000
	주택전세자금	-	139,563	163,359
			153,563	181,359
장기대여금	주택구입자금	5%	41,241	129,616
	주택전세자금	-	303,138	245,477
	조합원대출	-	865,189	885,539
			1,209,568	1,260,632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간의 구체적인 거래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일부기업의 경우는 기말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기중거래내역을 공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의 내역과 당사가 지급보증은 받은 경우에 대한 내용도 대부분의 기업이 공시하고 있다. 이 부분의 공시내용도 간단하여, 혹시 이러한 지급보증 등으로 향후 회사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지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다.

나. 사례기업의 주석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우선,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내역에서 보면, 중요한 기중 거래의 금액이외에 별도로 어떠한 내용의 거래인지를 간단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회사의 제품을 매출/매입하는 거래이외에 특이한 거래의 경우는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주주·임원 등과의 거래내역은 기말잔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중의 거래금액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거래내용 중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연히 공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주·임원 등에 대한 자금대여의 내역 등은 기말 잔액여부에 관계없이 기중거래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간의 지급보증내역에 대하여는 현행 지급보증금액을 단순히 제공하는 것 이외에 관련된 차입금의 내용과 금액 등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Ⅴ. 정책건의와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감사보고서상의 주석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그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점적으로 검토할 주석부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를 지적된 우리나라 기업의 주석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 감사보고사상의 주석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근거로 하여 근거로 하여, 보다 바람직한 주석체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임의로 선정한 36개 제조업체의 실제 주석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을 근거로 앞으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바람직한 주석의 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건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주석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주석사항에 대한 규정은 전체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의 회계기준에 비하여 그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그 규정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각 항목별로 주석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업들이 그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회사의 내용이나 각 계정과목의 내용을 공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하여는 현행 주석사항에 대해 정보이용자입장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주석사항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집합하여, 이를 토대로 각 항목별 주석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모범적인으로 공시한 기업의 사례를 마련하여, 공시의 내용이 보다 적정하여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각 업종별로 모범적인 공시의 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모범적인 공시내용을 예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범적인 공시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학회, 공인회계사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기업중 모범적인 공시를 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그 기업의 공시사례를 다른 여러 기업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범적인 예의 제시는 회계법인이나 각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주석내용을 더욱 건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감사보고서의 주석내용과 부속명세서간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회사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석사항 이외에 주기, 보충적 주석사항 그리고 부속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주석사항과 부속명세서의 경우는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실제 일부 기업에서는 부속명세서의 내용을 이용하여 주석사항을 공시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주석사항에서 간단한 개요나 중요한 사항만을 언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세한 내용을 부속명세서에 기재함으로써 주석사항과 부속명세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네 번째로 현행 주석사항의 기술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의 주석사항은 각 항목별, 즉 각 계정과목별로 주석사항을 나열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주석간의 연결이 명확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장기차입금의 내용과 담보 및 보증내역은 일반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석사항은 서로 다른 항목처럼 따로 기술이 되어있어, 서로 연결하여 분석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주석사항의 내용은 같은 항목에서 동시에 기술하여 공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형식적인 주석사항은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고, 회사의 재무상태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회계방침에 대한 주석의 내용은 일부 기업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내용보다는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많은 분야, 즉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부분, 우발채무의 내역 그리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가능한 한 자세히 기술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부속명세서와 같

은 단순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현행 주석사항에 추가적으로 기재할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환경 변화가 기업의 영업활동 등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주석사항이 없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말의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에 대해, 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으로 일반적인 내용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방법보다는 각 업종별로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기업에 이러한 경제위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의 개선을 위한 탐험적인 연구이기에, 이와 관련된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단순한 실태조사이기에 관련되는 자료에 대한 각종 통계치 등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감사보고서이외에 다른 공시수단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대표적인 공시수단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사업보고서를 예를 들 수 있다. 이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공시수단의 내용을 분석한다면 보다 나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기업의 공시와 관련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집단소송제의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으로 하여금 공시사항의 축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나은 정책제안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곽수근·안태식·전규안, 『주석공시사례연구』, 한국회계연구원, 2001.

금융감독위원회 외,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0.

김광윤·심태섭, 『현행 공시사항의 개선방안 : 회계투명성 관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2004.

이재식, "금융감독원의 감리방향과 감리지적사례", 『통합강의 제13기2년차 수습공인회계사 교재』, 2002, pp.129-168.

장지인·배길수·전영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재조명",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개선방안 심포지엄』, 한국회계연구원·한국회계학회, 2002..

한국공인회계사회, 『월간공인회계사 1월호』, 2004.

한국회계연구원,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 개선방안 심포지엄』, 2002.

PricewaterhouseCoopers(PWC), *The Opacity Index*, 2002. (www.pwcglobal.com)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3. (www.transparency.org)

〈부록 : 사례기업목록〉

업 종	회사명	감사인	감사의견
음식료품제조업	롯데제과 주식회사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주식회사 빙그레	안건회계법인	적정의견
	주식회사 선진	대주회계법인	적정의견
	신촌사료 주식회사	삼덕회계법인	적정의견
	오양수산 주식회사	삼경회계법인	적정의견
담배제조업	한국담배인삼공사	안건회계법인	적정의견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 제외)	주식회사 갑을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주식회사 방림	신한회계법인	적정의견
	전방 주식회사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봉제의복 및 모피제조업	주식회사 부흥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주식회사 비비안	신원회계법인	적정의견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조광피혁 주식회사	삼덕회계법인	적정의견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이건산업 주식회사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영풍제지 주식회사	대주회계법인	적정의견
	중앙제지 주식회사	인일회계법인	적정의견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주식회사 웅진닷컴	안진회계법인	적정의견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SK 주식회사	안건회계법인	적정의견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주식회사 경농	대주회계법인	적정의견
	동신제약 주식회사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주식회사 디피아이	안진회계법인	적정의견
	삼성정밀화학 주식회사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새한미디어 주식회사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성보화학 주식회사	삼경회계법인	적정의견
	SK케미칼 주식회사	신한회계법인	적정의견
	유유산업 주식회사	화인경영회계법인	적정의견
	주식회사 중외제약	안진회계법인	적정의견
	태경산업 주식회사	영화회계법인	적정의견
	한국합섬 주식회사	영화회계법인	한정의견*
	한미약품공업 주식회사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한화석유화학 주식회사	영화회계법인	적정의견
	주식회사 화승인더스트리	안진회계법인	적정의견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내쇼날프라스틱 주식회사	대주회계법인	적정의견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주식회사 금비	삼정회계법인	적정의견
	주식회사 벽산	안건회계법인	적정의견
	주식회사 유니온	삼일회계법인	적정의견

* 한정의견의 내용은 영업권의 평가감액 미반영과 관련된 것이므로 본 연구의 표본에 포함시킴.

Evaluating Notes of the Independent Auditor's Reports of Korean firms

Kwang-Yoon Kim*
Tae Sup Shim**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notes of the independent auditor reports of Korean firms to improv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Korean firms. To do this,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accounting practices of the auditor reports of 36 Korean companies. Based on the reviews, this study suggested some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accounting transparency as follows : First, the accounting standard for the notes of the independent auditor reports should be made more clear. Second, the model of the disclosures may be very useful to Korean accounting professionals including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financial statement preparers in Korean firms. Finally, by informing the disadvantages of the bad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s, the accounting transparency in Korea may be improved soon.

〈Key words〉 accounting transparency, disclosure, audit report, notes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jou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Tax and Accounting, Incheon City College